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349
----------	-------

발의연월일 : 2026. 3. 10.

발 의 자 : 이종배 · 김미애 · 윤영석
이만희 · 정연욱 · 안철수
권영진 · 김소희 · 김기웅
서지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민간기업에 대한 청년 고용 지원 및 청년 고용 정보 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음.

현재 정년연장, 정년 도달 후 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며,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2021년 9만 4,338곳에서 2025년 17만 1,026곳으로 2배가량 증가했고, 정년을 61세 이상으로 법정 최소 정년(60세)보다 연장해 운영하고 있는 기업도 2023년 6만 1,538곳에서 2025년 7만 1,398곳으로 증가하는 등 제도가 확대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청년 고용 위축을 방지할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등은 정년연장, 퇴직 후 재고용 등 계속고용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이와 연계되는 청년고용계획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계속고용제도 도입에 따른 청년고용 감소 완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의5 및 제8조의6 신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8조의5 및 제8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5(계속고용제도 연계 청년고용계획의 마련 등) ① 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등은 정년연장, 퇴직 후 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와 연계되는 청년고용계획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년고용계획을 제출한 기업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고용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기관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계속고용제도와 연계되는 청년고용계획을 평가지표로 반영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업등이 제출한 청년고용실적

이 청년고용계획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등에게 개선을 권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의6(계속고용제도 연계 청년고용계획 및 고용실적의 공표)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청년고용계획 및 청년고용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8조의5(계속고용제도 연계 청년고용계획의 마련 등) ① 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등은 정년연장, 퇴직 후 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와 연계되는 청년고용계획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라 청년고용계획을 제출한 기업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고용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u>③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u>

<신 설>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기관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계속고용제도와 연계되는 청년고용계획을 평가지표로 반영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업등이 제출한 청년고용실적이 청년고용계획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등에게 개선을 권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의6(계속고용제도 연계 청년고용계획 및 고용실적의 공표)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조의 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 받은 청년고용계획 및 청년고용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